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남완현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 투자 유치, 교육, 경진대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 제정 배경 및 취지

-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수 6위, 청년 비율 2위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영등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편,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은 고용시장 침체를 반영하여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경제활동 수단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그중에서도 창업은 고용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자본과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 초기의 진입장벽이 높음에 따라 청년층이 창업 초기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청년’, ‘창업’, ‘창업자’, ‘청년 창업자’ 등 용어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4조(지원대상)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창업 예정인 청년 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이는 구민이 아니더라도 영등포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 인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에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경영·마케팅·교육 지원, 투자 유치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 안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및 안 제7조(투자 유치 등)는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창업 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투자자 유치 노력, 정보교류 창구 마련, 공정한 투자계약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이를 통해 자본·사업경험·인적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6조제2항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재 영등포구에서 ‘창업공간 지원’은 초기창업자(3년 이내 창업한 자) 또는 예비창업자(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는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활동 하는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안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는 중앙행정기관·서울시·창업 관련 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표창)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청년층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경험·정보 및 투자연계기반의 부족 등 현실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로확대 ▲교육·컨설팅·정보제공 ▲자금·기술사업화 ▲창업공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     |
|------------------|-----|
| 의<br>안<br>번<br>호 | 577 |
|------------------|-----|

발의연월일: 2025. 8.

발 의 자: 남완현·전승관·최인순  
유승용·정선희 의원  
(5인)

## 1. 제안이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 투자 유치, 교육, 경진대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마.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청년 창업자”란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

2.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자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2. 청년 창업 경영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2.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정보제공 등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사무실 개소 비용 포함)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창업공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는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